

광주지방법원 2020. 1. 9 선고 2018가단526901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

담당변호사 류노엘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목

변론 종결 2019. 12. 5

판결 선고 2020. 1. 9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191,967,52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분 송달
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골재 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6.경부터 2013. 4. 23.까지 그 실 질적 대표는 C였고,피고는 토목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(이하 '이이라 한다)에서 2002. 3. 31.부터 2014. 8. 21.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.

나. 2012 . 7. 31.부터 2013 . 6. 11. 까지 피고는 원고의 법인통장(광주은행 E, 이하 '이 사건 계좌'라고 한다)으로 합계 692,239,400원을 송금하였고,원고는 같은 계좌에서피고에게 합계 854,996,000원을 송금하였다(이하 송금액과 입금액의 차액인 162,756,600원을 '이 사건 금원'이라 한다)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갑제1, 2, 4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있는 증거의 가지번호 포함)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가.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청구

(1) 주위적 청구

피고는 C와 공모하여,2012 . 7. 31.부터 2013 . 6. 11. 까지 C가 임의로이 사건금원을 피고에게 송금하거나,피고가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의 통장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사적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하였다.

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있다.

(2) 예비적 청구

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금원을 취득함으로써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,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나. 대납한 세금에 대한 반환 청구

원고는 2012. 1분기 및 2분기 동안 F 및 도의 거래를 통하여 피고가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할 부가세 및 가산세 29,210,925원을 대납해 주었으므로, 피고는 위 세금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3.판 단

가. 이 사건 금원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2012. 7. 31.부터 2013. 6. 11. 까지 피고가 이 사건 계좌로 합계 692,239,400원을 송금하였고, 원고는 같은 계좌에서 피고에게 합계 854,996,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.

불법행위책임 및 부당이득반환의 요건사실은 모두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주장·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,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따라서, 원고의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나. 대납한 세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가 원고 회사의 명의를 제공받아 F 및 G와 관련된 골재사업을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,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. 1)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이세라

1) 원고는 피고가 이를 자백하였다고 주장하나, 피고는 원고의 위 골재사업과 관련된 자금을 피고가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 명의로 위 골재사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한 바 없다.